파주시공고 제2026-3011호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9.

파 주 시 장

1. 공고내용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디에스건설 신O욱, 박O현	파주시 마무리길 11, 2층(금촌동)	지반조성・포장공사업 (파주19-02-01) 영업정지 5개월 2026.11.17. ~2027.04.16.	건설업 등록 기준 (기술능력) 미달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3호

2. 기타사항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(KISCON)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